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정비 로드맵

2020. 12. 2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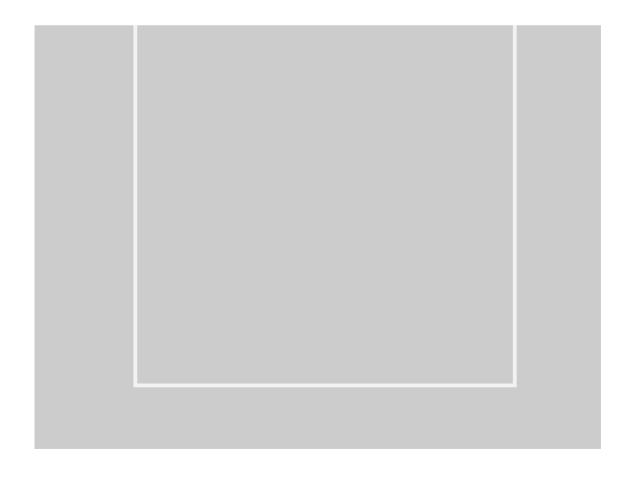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※ 본 로드맵은 12.24(목)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되므로,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1. 요약1~5
2. 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정비 로드맵 ········6~38



요약



「인공지능 법・제도・규제 정비 로드맵」 요약본

- ◇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여,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·종합적「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정비 로드맵」마련
- 법제정비단 구성·운영('20.1~)을 통해 추진과제를 발굴하고, 현장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('20.4)
- 국조실 등 각 부처와 협의('20.11~12)하여 30개 주요 정비과제를 도출·확정

1 배경 및 주요경과

- ◇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**인공지능**은 **데이터**와 **결합**하여 **국가·사회** 全 분야에서 **디지털 전환**을 **가속화**
 - 각 국은 인공지능 경쟁력 증진과 국가혁신을 위한 전략을 이행 중이며,
 우리도 '인공지능 국가전략('19.12)'에 이어 '디지털 뉴딜('20.7)'을 수립·추진
- ◇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과 도입이 본격화되면서,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용 걸림돌을 제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한 선제적 법·제도·규제 정비 긴요

2 정책 환경 및 중점 정비 과제

- □ 인공지능은 데이터·클라우드·5G와 결합하여 ¹에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산업 혁신, ²국민생활 편의 중진과 사회현안 해소, ³고도의 생산성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반면,
 - ※ 인공지능에 의한 추가 경제가치(~'30)는 약 13조 달러(맥킨지, '18) ~ 15.7조 달러(PwC, '19)로 추정
 -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·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, 계층 간 격차 확대,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에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
 - ※ 인공자능 채용시 성별 편향(아미존, '18), '16~'30년까지 700만여개의 일자리 변동 전망(맥킨지, '18)
- □ 주요국이 인공지능 확산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*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, 우리도 **지난 1년간 논의를 종합**하여 **30개의 법·제도·규제 정비 과제** 도출
 - * (미국) 과잉규제는 지양하나 반독점 규제 / (EU) GDPR, 글로벌 법제도·윤리 논의 선도

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 (18과제)

데이터기본법 제정, 저작권법 개정,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,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

- * 법령(19건), 지침·가이드라인(2건)
- * 단기(11건, '21~'22), 장기(10건, '23~)

역기능 방지 (12과제)

디지털포용법 제정, 알고리즘 공정성· 투명성 확보,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

- * 법령(9건), 지침 가이드라인(4건), 제도운영개선(4건)
- * 단기(15건, '21~'22), 장기(2건, '23~)

3 목표 및 기본방향



4 주요 추진과제

① 인공지능 공통 기반

- ①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: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· 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
- [데이터 기본법제 마련 등] ^①데이터의 개념·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'데이터기본법', ^②데이터에 기반한 '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', ^③중소제조기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'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' 마련('21)
- [설명요구권/이의제기권 도입]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'21)
- [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저작물 활용]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토록 '저작권법' 개정('21)
- [데이터 관련 부당 행위 규율 등] 데이터의 독점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우선 마련("21)하고,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 정비("22)

- ② <u>알고리즘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</u> :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을 방지하여 관련 기술발전과 인공지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
- [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·감독 환경조성] 알고리즘 개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의 평가·관리·감독체계를 우선 유도('21)함과 동시에,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을 평가·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(~'23)
- [플랫폼사업자 공정성 강화]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**알고리즘의 인위적** 조작방지와 공정한 운영을 지원할 가이드라인 마련*('21) 및 법률 제정(필요시)
- ③ 인공지능의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 :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, 국제적 논의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주체 인정 및 책임체계를 정립하는 법제
- [인공지능 창작물 권리 관계 정립/민·형사상 법인격 인정]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논의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·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('21~) 및 손해배상·처벌이 가능토록 민법·형법 개정 검토('23~)
- [인공지능에 의한 계약 효력 명확화]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이를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인정 여부 관련 검토('23~)
- ◆ 인공지능 윤리 정립 : 개발에서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윤리기준 정립과 후속과제 추진
- [윤리기준 마련]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('20.12.23) 후,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·개발('21)과 함께 각급 학교 윤리 교육 추진('22)

② 인공지능 활용 확산

- ① <u>의료분야</u> : 신약개발,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제도 보완을 통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
- [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/건강보험 적용개선]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내수한계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('22.上)과 함께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('23~)

- **❷** 금융분야 : 인공지능 확산과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간의 조화
- [사설인증제도 안전성 강화/전자금융사고 대응력 강화] **사설인증서**의 **신뢰성을 판단**할 수 있는 '전자서명 평가·인정제도' 운영('21.下) 및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('21.下)
- ❸ <mark>행정분야</mark> :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
- [자동화행정근거/권리구제 절차 등의 마련] **인공지능** 등을 활용한 **행정** 행위의 법적근거와 함께 **오류발생**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('21.下)
- ◆ 고용·노동분야 : 고용형태 다변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,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
- [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]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('21)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('23~')
- **5** <u>포용·복지분야</u> :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,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
- [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/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입 등] 안정적·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('21)하고, 인공지능이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결정·판단 등을 보조할 경우의 법적효력 인정 검토('23~)
- ⑥ 교통분야 :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·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
- [자율주행차·자율운항선박 규제 혁신] **자율주행차** 분야의 **추가적**인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,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('21)

5 향후계획

- □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수립 후 정비 본격화
 - 30개 과제 **주관부처별 개선과제 정비**를 위한 **추진계획** 수립('21.2분기)
- □ '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'을 구성·운영하여 지속적인 로드맵 수정·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(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필요시 4차위와도 협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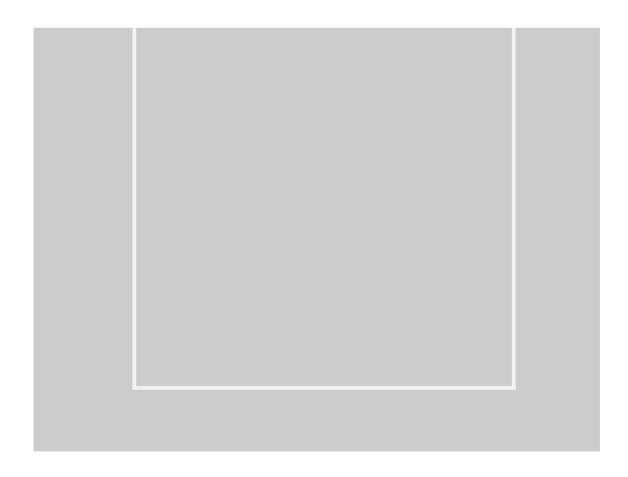
붙임

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과제 리스트(30개)

	과제 목록	관계 부처	일정
	인공지능 공통 기반		
	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	과기정통부	'21.上
	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	과기정통 부 개인정보위	'21.上
데	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	산업부·중기부	'21.上
οÏ	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	개인정보위	'21.上
터	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	문체부	'21.上
	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	개인정보위	'21.下
	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	특허청·공정위	'22.下
알	자율적 알고리즘 관리·감독 환경 조성	과기정통부	′21.下~
고리	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	과기정통부·공정위	'21.下
즘	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	공정위·과기정통부	'21.上
법인	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	문체부·특허청	′21~
격	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	법무부·과기정통부	′23~
	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	과기정통부·법무부	′23~
책 임	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	법무부·공정위	′23~
	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	과기정통부	′23~
윤	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	과기정통부	'20.12
리	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	과기정통부·교육부	'21.下
•	인공지능 활용·확산		
의	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개발	식약처	′22上
료	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	복지부	′23~
금	이상금융거래 탐지·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	금융위	'21.上
융	결제·인증서비스의 안전성 강화	과기정통부·금융위	'21.上
행	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	법제처	'21.下
정	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	법제처·권익위	'22.上
	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	법제처	′23~
고	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	고용노동부·기재부	'21.上
용	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	고용노동부	23~
	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	과기정통부	'21.下
포	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	과기정통부	'22.下
용	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	법무부·과기부·복지부	′23~
	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	국토부해수부	′23~



본 문



순 서

I. 로드맵 수립 배경6
파 정책 환경 및 국내외 법·제도·규제 정비 동향 … 8
피. 법제 정비 기본방향12
IV. 비전과 전략13
V. 법제 정비 과제 ······ 14
1. 인공지능 공통 기반14
2. 인공지능 활용 분야 24
VI. 향후 계획 36

│. 추진 배경

- □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결합하여 경제·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촉진
 - ※ 미국 스탠포드대학 앤드류 응(Andrew Ng) 교수는 "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(Al is the new electricity)"라 언급하며, **인공지능**이 가진 **범용기술로서의 가치**를 강조
 - 이에 미국,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기술·시장 선점과 경제·
 사회 혁신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*을 마련·추진
 - * 美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행정명령('19), 日 인공지능 전략('19), 獨 인공지능 육성전략('18) 등
- □ 우리도 '인공지능 국가전략'을 수립·추진('19.12~)하고 디지털 뉴딜을 본격화('20.7~)하면서 인공지능·데이터 활용이 양적·질적으로 확대^{*}되고,
 - * 인공자능 학습용 데이터(21→191종), 빅데이터 플랫폼(10→16개), 공공데이터 개방(4.96→9.89만개) 등
 - 이 비대면 경제·사회에서 인공지능·데이터는 5G 네트워크와 결합하여경제 성장과 혁신의 新동력으로 자리 매김



- □ 그러나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부작용*, 새로운 기술과 舊제도 간의 간극, 사회 구성원간 이해관계 충돌 등 새로운 당면 과제도 등장하여,
 - * 알고리즘·데이터 편향성,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이용격차 확대,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, 개인정보 침해, 거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
 - 인공지능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,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·포괄적 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정비 필요성 대두
 - 이에, 인공지능 법제정비단^{*}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, 현장의견 수렴,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'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정비 로드맵' 마련
 - * 학계·법조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주요국의 입법동향 및 현황 분석 후, 분야별 (데이터, 윤리, 인공지능 법인격, 노동, 의료, 포용·복지) 주요 정비과제 도출('20.3~9월, 29회)

◈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추진 경과 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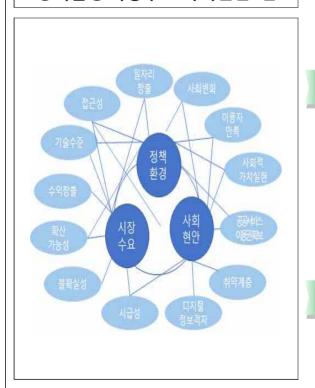
□개요

- (목적) 국내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·법조계·학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, 인공지능 법제도를 선제적·종합적으로 정비
 - * 전체회의 및 작업반(9개 : 데이터, 지식재산권, 책임, 알고리즘, 금융, 플랫폼사업, 노동, 의료, 포용·복지)을 구성·운영하여 주요 분야 및 과제 논의('20.3~9월, 29회)
- (기간) '20. 4. ~ '20.12. (약 9개월)
- (역할) 법제도 정비 추진 분야·과제 도출

□ 논의 결과

- o (정책환경 정비) 인공지능 국가전략·한국판 뉴딜 등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,
- 데이터·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핵심 자원과 관련되거나,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제도 정비
- (시장수요 확대) 기술 경쟁력, 시장 창출, 타 분야 확산 가능성 등
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모멘텀 분야 선결과제 해결
- (사회현안 해결) 사회적 약자 배려, 사회적 가치·포용을 위한 서비스 구현 필요

정책환경·시장수요·사회현안 맵



√ 분야별 과제

인공지능 공통기반

데이터, 알고리즘, 법인격, 책임, 인공지능 윤리

인공지능 활용 확산

의료, 금융, 행정, 고용·노동, 복지·포용

√ 기능상 과제

산업 진흥과 활용기반 강화

데이터기본법 제정, 저작권법 개정,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등

역기능 방지

디지털포용법 제정, 알고리즘 공정성·투명성 확보,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

※ 정비사항: 법령(28건), 지침-가이드라인(6건), 제도운영개선(4건) / 단기(26건, '21~'22), 장기(12건, '23~)

Ⅱ. 정책 환경 및 국내외 법제도 정비 동향

1 정책 환경

- ◇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, 인공지능· 데이터의 활용 편익을 체감*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,
 - * 마스크앱, 확진자 동선추적 등 방역은 물론 치료제 개발 등에도 인공지능·데이터 활용
 - 경제·산업, 사회, 고용·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·데이터 활용 확산의 명(明)과 암(暗)이 드러나며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들도 부각

【 경제·산업 】 혁신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vs. 경제적 불평등 대응

- □ (明) 인공지능은 **다양한 분야**와 **융합**(AI+X)하여 **기존산업을 혁신**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제품·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
 - < 글로벌 인공지능 파급효과 >

AI에 의한 추가 경제가치(~'30년) > 약 13조 달러 연평균 GDP 성장률 1.2%p 추가 상승 AI 미도입시 73조\$

출처: 맥킨지('18)·PwC('19)

< 인공지능 융합(AI+X) >



- □ (暗) 데이터 독점*, 알고리즘 담합 등 불공정행위,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** 등 개인·기업·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 발생
 - * 미국, 중국, EU, 일본 등은 데이터의 유통·활용 촉진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주력
 - ** 美 빅테크기업(GAFAM)은 전체 시가총액의 25%를 차지(7조 달러, '20.8 기준), 韓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통신 3사 시가총액의 3배(78.4억 vs 29.5억, '20.11)
 - ▶ (당면 과제) ^①자유로운 데이터 이동·활용 제도 기반 마련 ^②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^③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남용 방지 및 공정 경쟁 기반 조성

【 사 회 】 사회현안 해결의 新 동력 vs. 오남용·편향성 등 부작용 대비

- □ (明)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 안전·편의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, 기후·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·대응, 코로나 19^{*} 등 당면한 사회현안 해결
 - * 코로나19에 대한 AI 활용 사례 : AI기반 진단키트 및 백신·치료제 조기개발, AI기반 의료영상 신속 판독, 비대면·무인시스템 도입 촉진,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
 - <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효과(~'22, OECD('19), 맥킨지('18) 등) >

교통	· 교통 혼잡도 10%▼ , 교통사고 5%▼	의료・	· 건강수명 3세▲
물류	· 물류 효율성 33 %▲	복지	·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 95% 달성
제조·	· 제조 생산성 10%▲	치안・	· 범죄 검거율 90% 수준▲
금융	· 금융사고 탐지 정확도 95% 달성	안전	· 산림 피해면적 10%▼

- □ (暗) 기술 오남용과 알고리즘·데이터의 편향성,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접근성 격차 문제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제기
 - ※ (사례)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프로그램(COMPAS)의 인종차별(16.7, 美), 특정 성별에 편향된 인공지능의 채용 추천(18.10, 美 아마존), 인공지능 조작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(19, 英)
 - ▶ (당면 과제) ^①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마련, ^②인공지능 윤리 정립, ^③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, ^④알고리즘 투명성 확보, ^⑤소외계층 포용 법제 마련

【 고용·복지 】생산성·효율성 증대 vs. 일자리 대체에 따른 준비 필요

- □ (明) 인공지능은 **노동생산성·효율성 증가***, 새로운 직무 창출을 가능케 하고, 재택·시간근무 등 근무의 유연성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
 - *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'35년까지 최대 40% 증가 전망('17, Accenture)
- □ (暗) 신규직종 탄생과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 중*이나, 실업·직종전환에 대한 대비 속도는 상대적으로 부족
 - * '17년~'37년 사이에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, 72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(PWC, '18) '22년 새로운 일자리 1억 3,300만 개 vs 사라지는 일자리 7,500만 개(WEF, '18)
 - ▶ (당면 과제) ^①새로운 형태의 고용(플랫폼종사자 등)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모색 ^②실업·직종전환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(실업·고용보험, 재교육) 구축

2 국내외 법·제도·규제 정비 동향

1. 주요국 동향

- □ (미국) 혁신을 방해하는 과잉대응(Overreach)은 지양*하되, 구글·아마존 등 대형 테크기업의 불공정행위 제한**과 책임성 강조는 명확화
 - * AI 규제 가이드 초안(20.1, OMB) : ^①규제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되며,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규제 도입, ^②연방기관의 규제방식 결정시 규제가 인공지능의 성장·혁신에 미칠 효과 평가 등 규정
 - ** ① 美 상원 연매출 5000만 달러 이상 개인정보 취급 테크기업을 규제하는 '알고리즘 책임법 발의'19.4)
 - ② 美 법무부, 구글 대상 인터넷 검색 및 광고 독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소송 제기(20.9)
 - ③ 美 하원 '디지털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, 4대 박테크(아미존 페이스북, 구글)'의 독점 현상 지적(20.10)
- □ (EU) 인공지능·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법제도·윤리 논의를 선도
 -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인 '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*', '신뢰가능한 AI 가이드라인'에 이어 '고위험 인공지능'에 대한 규제·입법방침** 발표 등
 - * GDPR(18.5): 개인정보 관련 유럽 內 공통 법제 적용, 개인정보 주체 권리 및 기업 책임 강화
 - ** AI백서('20.2) : '고위험 AI'의 경우 입법을 통해 사람의 감독, 정보 제공, 원격생체 인식 금지 등을 규제하고 사전 적합성 평가 도입방침 발표
- □ (중국)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·데이터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, 자국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관리* 병행
 - * 중국 과학기술부·상무부는 컴퓨팅과 데이터 처리 기술, 텍스트 분석, 컨텐츠 추천, 음성인식 등 기술 수출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함('20.8)

< 기타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>

국가	주요 내용
영국	▶ 공공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(*19.6) ▶ 인공지능 의사결정 설명 지침(`20.5)
일본	▶ 인공지능 활용에서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('19.7) ▶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이드라인('17.7)
호주	▶ 자동화된 차량의 운행에 관한 지침('17.5)
싱가포르	▶ 자율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 및 시험 운행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('17.7)

2. 국내 동향

- □ (법제 개선)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법제로서,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마련('20.12.10 시행)
 - 인공지능·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**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**을 규정한 **데이터 3법**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 **개정**('20.8.5 시행)
 - 의료, 교통, 금융 등 **분야별 인공지능 도입·활용·확산**(AI+X)을 위한 개**별 영역별 법령 제·개정**
 - ▶ (의료)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('19, 개정)
 - ▶ (교통)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9, 제정)
 - ▶ (금융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`19, 개정)
 - ▶ (항공)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('19, 제정)
 - ▶ (로봇)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('20, 개정)
- □ (규제 개선) 인공지능 등 신기술·산업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운영,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,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,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
 - ▶ 규제 샌드박스(데이터, AI, 핀테크, 모빌리티, 바이오헬스 등 364건 승인)
 - ▶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(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규정에 대해 5차례 전환방안 마련, 583건 발굴)
 - ▶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(자율주행차, 수소차·전기차, 드론, 가상·증강현실, 로봇)
 - ▶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(신약, VR 등 6차례 총 306건 현장 애로 발굴·해소)
 - 10대 분야 중 **데이터·AI 분야 규제혁신 작업반**을 구성('20.3월)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(43건)하고,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^{*} 선정·추진
 - *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, 교수의 AI기업 겸직 허용,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 등
 - 핀테크, VR·AR 등을 포함한 **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규제를 중장기적**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한 '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' 수립(국조실, '20.12)
- □ (보완 사항) 그간 정부는 산업·사회전반의 규제개선과 법제 정비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공지능에 특화*된 법·제도 정비 계획과 실행은 다소 미진
 - * 데이터 기본법, 인공지능 윤리, 알고리즘의 투명성, 인공지능의 법인격·책임성 등

Ⅲ. 법제 정비 기본 방향

◇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존 법·제도를 정비하고,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"종합적·선제적 인공지능 법·제도 로드맵"을 제시

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특성, 국내 실정을 고려한 법·제도·규제 정비

□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빠른 발전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新기술과 舊제도와의 간극 극복을 위한 법·제도 정비과제 발굴·개선

<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이슈 >



* 출처 : KISDI, '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'('19) 재구성

- □ 국내 법체계, 해외 입법 동향을 **종합적으로 분석**하여 글로벌 법·제도 정비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 정비 추진
 - ※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과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,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의 선별적 규제, 개인정보 보호 강화, 알고리즘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등

민간의 자율·창의성을 존중하고, 협력과 합의에 기초한 법·제도·규제 정비

- □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**민간의 자율·창의를 존중**하는 親시장적 **법제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**
 - 편향성·사생활 침해·오남용 등 **위험**과 **역기능 최소화 방안 마련** 시에도 **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기준**(가이드라인·윤리기준 등) 및 **자율규제 우선 도입**
- □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성·운영을 통해 **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**와 **사회적 합의에 기초**한 장·단기 정비과제를 선별
 - ※ (단기) 관계부처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 / (장기) 사회적 공론의 장(場)을 통해 면밀히 검토・추진
 - 이 법제정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·산업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비 (의료·금융) 뿐만 아니라 노동·복지 등 사회 영역까지 다양하게 포괄

Ⅳ. 비전과 전략

비전

혁신과 포용이 조화로운 인공지능 법·제도

목표

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·제도·규제 로드맵 제시

기본 방향

- ① 인공지능 기술 특성에 따른 「선제적 법·제도·규제」
- ②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「**종합적 법·제도·규제**」
- ③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「시장친화적 법·제도·규제」
- ④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「상생·포용 기반 법·제도·규제」

고용노동 의료 🙃 (2) 인공지능 활용 분야 인공지능 금융() 🗅 복지포용 활용·확산 교통 🖯 🔾 해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 알고리즘 기반 조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1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공통 기반 법인격 검토 책임체계 정립 윤리 기준 마련

추진 과제

∨. 법제정비 과제(총 30개 과제)

1. 인공지능 공통 기반(17개 과제)

1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(7개)

- (현황) 데이터는 AI, 클라우드, 5G 등 신기술 발전과 맞물리며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을 촉발하는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작용
 - 세계 각국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 전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, 데이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
 - * (美) 빅데이터 R&D 전략('16), (日) Society 5.0 실현 데이터 활용 전개('17), (中) 빅데이터 발전계획('17), (韓) 데이터·AI 경제 활성화 계획('19), (EU) 유럽 데이터 전략('20)





출처 :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가공 일자리, 일자리위원회('20.6)

o (해외)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 중

국가	법령 및 주요 내용
EU	(GDPR)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, 설명요구권·개인정보 이동권 등 보장(18.5)
영국	(기업 및 규제개혁법) 금융,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('13.8)
프랑스	(디지털 공화국법) 공공데이터 개방, 데이터 이동권 등 데이터 유통 촉진('16.10)
일본	(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) 국가·지자체·기업 보유 데이터의 활용 촉진(16.12)
호주	(소비자데이터권리법)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데이터 권리 보장(19.8)

- (국내)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데이터 3법 개정 완료
 ('20.8.5 시행)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법제 정비 노력
 - 다만, 데이터 가치사슬(수집·유통·활용) 전반에 대한 규율 공백*이 존재하고,
 -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**불비
 - *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데이터법의 규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데이터에 대한 법제는 일부 미비
 - ** 신용정보보호법 개정(20)으로 자동화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만 인정
 - →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보완하고, 데이터의 생산·거래·활용 촉진을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진흥을 도모

①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

과기정통부, '21.上

- 현황 데이터 개념 및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가 부재하여 권리·의무관계의 불확실성, 데이터 유통·거래 부진 등 문제발생
- 개선 1) '데이터'의 개념을 정의*하고, '데이터생산자', '데이터거래사업자' 등 참여 주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권리·의무관계를 명확화
 - * 결합·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료로서 데이터를 정의
 - 2) ^①데이터의 품질관리, 표준화, ^②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고, ^③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촉진
- 일정 '데이터 기본법' 제정 ('21.上)

②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과기정통부·개인정보위, '21.上

- 현황 수집·가공·보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불비 ※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·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'본인신용정보관리업'만 허용
- 개선 '데이터관리업'의 업무내용, 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, 데이터 기반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등장 촉진
- 일정 '데이터 기본법'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'21.上)

③ 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

산업부, 중기부 '21.上

- 현황 1) 산업데이터 특성*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, 지원규정 등 기반 미흡* 등으로 산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애로가 크며, 민간의 자율적 활용 제약
 - * 다양·방대한 범위로 BM 도출 곤란, 벤치마킹 사례 부족 등으로 기업 애로, 高 비용부담 및 확장성 제한으로 기업 간 협업 등 민간 추진에 한계
 - 2)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법적 공백 및 체계적 지원기반 미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 존재
- 개선 1) ^①산업데이터 활용·보호원칙 제시 및 활용지원 전문회사 등 거래·활용 촉진, ^②선도기업 선정·지원, 협업지원센터, 전문인력 양성 등 근거 마련
 - 2) 제조데이터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령 제정
- 일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('21.上),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령 제정('21.上)

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위, '21,上

- 현황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오류 정정·보완 불기능
- 개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요구권·이의제기권 보장
- 일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('21.上)

⑤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

문체부, '21.上

- 현황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(음악, 그림, 글)인 데이터를 활용(복제·전송)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*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저해
 - *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
- 개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,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 활용(복제·전송)을 허용
- 일정 저작권법 개정(*21.上)

⑥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

개인정보위, '21.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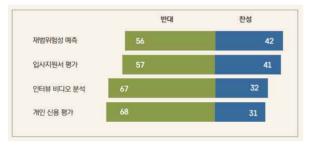
- 현황 결합전문기관 도입·운영('20.8~)을 바탕으로 현행 ^①결합절차, ^②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^{*} 등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 논의 필요^{**}
 - * ^①결합체계를 결합키 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으로 이원화, ^②가명정보도 개인 정보에 포함되므로, 처리시 개인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조치 요구
 - **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항에 대해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(시행령 제62조3)
- 개선 실제 제도 운영 사례, 결과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실시
- 일정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('21.下)

①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

특허청 · 공정위, '22.下

- ^①기업·개인 간의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부당하게 취득·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 ^②플랫폼 사업자의 경우,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관련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증가
- 기선 ①데이터의 부당한 취득·사용·공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,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검토 ②데이터 보유·활용 능력을 시장지배력 평가 시 고려요소로 규정^{*}하여 지배적 플랫폼이 데이터의 부당한 이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*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마련
- 일정 ^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('22.下), ^②(가칭)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('21.上)

- o (현황) 알고리즘은 인공지능기술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로서, 정치·사회·경제·문화 전반의 의사결정*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
 - * 신용평가(대출 등 금융상품), 상품추천(온라인 쇼핑몰), 콘텐츠 추천(넷플릭스), 가격결정(아마존), 맞춤형 광고(포털, 온라인플랫폼), 인공지능 면접(채용) 등
 - 알고리즘 특성 中 '편향성', '불투명성'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불신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초래, 인공지능기술 발전·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 - * (편향성) 알고리즘 적용으로 인종, 사회적 지위, 성향, 빈부, 성별 등의 차별 발생 (불투명성) 인공지능 시스템 작동 과정을 인간이 알 수 없는 현상(블랙박스 속성)
 - < 분야별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찬반 비중 >
- <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의견 >





출처: Pew Research Center(18)

(해외)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에 의한 편견 방지,
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 중

<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동향 >

구분	주요 내용
EU,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·공정성 규칙('20.7)	플랫폼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, 상대적 중요도를 약관에 공개
EU, GDPR ('18.5)	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 도입
EU, 인공지능 백서('20.2)	고위험 AI시스템의 행동·결정을 추적·입증할 수 있는 기록·데이터 보관, 고위험 AI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
미국,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('20.4)	AI와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투명성, 설명가능성, 공정성, 견고성과 실증적 타당성, 책임성 등을 갖추도록 함

- (국내) 알고리즘 공개 기준·범위 등 알고리즘의 편향성·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불비
 - → 알고리즘 투명성·공정성 확보와 기업의 자율성·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을 갖춘 제도화(법적 권리 인정, 기준 마련 등) 방안 모색

①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·감독 환경 조성

과기정통부, '21.下~

- 현황 알고리즘의 편향성·오류를 평가·검증할 수 있는 체계 부재
- 개선 정부의 직접적인 알고리즘 규제는 알고리즘 개발 위축과 인공지능 편익 감소를 초래하므로, 기업 자율적인 평가·관리·감독 체계* 구축·운영 * 민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내부 감사를 권고, 필요시 검증 가이드라인 제시
- 일정 가이드라인 제정('21.下), 필요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('23~)

②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

과기정통부 · 공정위, '21.下

- 현황 설명요구권 행사로 인해 기업의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*이 공개될 수 있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
 - * 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인적·물적 투자를 통해 가격·거래조건·거래방법 등에 관한 절차·방법·규칙들을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에 속함
- 개선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, 민간의 자율적인 알고리즘 공개 기준·범위· 방법 등을 제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內에서 투명성 확보
- 일정 (가칭)알고리즘 공개 및 설명 가이드라인 제정('21.下)

③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 · 투명성 확보

공정위·과기정통부, 21.上

- 현황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공정거래 훼손 및 소비자 후생 저하
 - ※ 공정위는 쇼핑검색결과에서 자사를 우대한 플랫폼사업자에게 "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경쟁을 왜곡"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·과징금 부과(20)
- 개선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 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출순위· 기준 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
 - ※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
- 일정 (先)민간자율규제, (後)온라인플랫폼 관련 법규 정비('21.上)

- (현황)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과 같은 수준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문제*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 및 인공지능 자체의 권리주체 인정 여부 논의 등장
 - * 인공지능 자체적 판단으로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,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 행위 등이 발생하여 민·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

【 인공지능 법인격 주체성·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중 1순위 】



- 또한,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활동 촉진^{*}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**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^{**}의 권리주체 인정 논의**도 제기
 - *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, 무단복제로 인해 투자 감소 및 혁신 지속이 어려워져 공공의 사회·경제적 혜택 감소
 - ** 작곡하는 인공지능 '라무스', 그림그리는 인공지능 '딥드림' 등
- (해외) EU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'전자인(e-person)'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하는 '인공지능 로봇 결의안'을 발표('17.1)한 바 있으나, 법규화되지 못함
 - 인공지능을 발명자·저작자로 인정하는 법률은 없고, 인공지능 창작물의 **저작물성은 일부 국가^{*}에서 인정**
 - * (미국, 유럽 등) 인공지능의 발명자·저작자 적격성과 창작물의 저작물성 부정 (영국, 뉴질랜드, 인도 등)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인공지능 제작자에게 권리 부여
- (국내)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법 사례는 없고, 인공
 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도 인정하지 않음
 - →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와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논의는 강(强)인공지능과 연결하여 장기적으로 검토

①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

문체부 · 특허청, '21~

- 현황 현행법은 발명·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아, 산업·문화·예술의 발전 차원에서 창작물의 권리 관계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
 - ▶ 특허법 제33조(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) ① <u>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</u>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- ▶ 저작권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저작물"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 - 2. "저작자"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- "기선 ^①인공지능 창작물의 투자자·개발자를 지식재산권자로 확대하여 인정하거나, ^②제한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인정하는 등 권리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국내 의견수렴 및 공론화결과를 바탕으로 법체계 개편안 마련
 - * 권리 인정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논의 결과와 연계
- 일정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허법·저작권법 개정 또는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('21~)

②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

법무부·과기정통부, '23~

- 현황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곤란하거나,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의 단독 범죄 발생시 범죄 능력 또는 형벌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존재
- 개선 인공지능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및 범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·형사상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
 - * (찬성) 인격의 주체 여부는 경제·사회적 역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공지능은 인격권의 주체가 가능, (반대)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의 기능에 불과
- 일정 민법(법인격) 또는 형법(인공지능 처벌) 등 개정방안 검토('23~)

- (현황)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 결과, 손해·상해·범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공지능의 민·형사상 책임 이슈 등장
 - (계약책임)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계약의 이행·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
 - ※ 6살 어린이가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'알렉사'에게 장난감과 쿠키를 사달라고 말한 것이 주문으로 인식되어 18만 원 상당의 장난감과 쿠키가 배달(17.1)
 - (불법행위책임) 인공지능에 의해 상해·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인공지능 이용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되어 피해자가 손해 부담
 - ※ 테슬라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해 충돌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, 美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차가 사고원인이라고 지적(*16.5)
 - (인공지능 범죄) 인공지능의 독립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, 인간의 행위만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법 적용에 한계
 - ※ 미국 쇼핑몰 순찰 로봇이 16개월 유아를 공격(16.7)
- o (해외)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,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논의 중

< 인공지능 책임 관련 세계 입법 동향 >

국가	주요 내용
EU	인공지능 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민사책임 보고서 발표('20.7) : 피해자·제품·서비스 간의 계약관계와 손해 발생만으로 제공사가 책임
미국	통일 전자거래법('99) : 전자 에이전트(electronic agent)를 계약체결의 주체로 인정하되, 계약의 효과는 그 배후의 개인에게 귀속
독일	연방도로교통법 개정('17) : '완전히 자동화된 자동차'에 의한 피해 발생시 제조자나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 귀속

- o (국내) 인공지능 자체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 없이 인공지능의 민·형사상 책임에 대한 학술적 논의·연구 위주
 - → 인공지능이 완전한 민·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법인격 부여 논의와 직결되는 것으로, 강(强)인공지능 수준의 기술 발전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검토
 - 보조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설정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

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

과기정통부·법무부, '23~

- 현황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공지능 판단이 인공지능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·취소될 수 있고*,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 발생
 - * 비정상적인 의사표시,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
- 개선 인공지능의 의사표시를 인공지능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고,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을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*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
 - * '표현대리(表見代理)' 법리(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) 유추적용
- 일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검토('23~)

②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

법무부 · 공정위, '23~

- 현황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 원인을 특정·입증하기 어렵고, 인공지능 제품 결함으로 손해 발생 시에도 배상받지 못하는 결과 초래
 - * AI 소프트웨어의 경우,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불확실
- "1선 ^①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자와 인공지능 제품·서비스 제공자에게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, ^②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요건^{*}을 마련하는 등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
 - * (예) 국민의 생명·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고위험 분야의 경우 시스템 설계자·운영자 등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, 손해 발생 시 과실이 적거나 없어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
- 일정 민법·제조물책임법 등 개편방안 검토('23~)

③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

과기정통부, '23~

- 현황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된 범죄행위 등장에도 불구하고, 책임주의 원칙상 현행 형법에 따른 형벌*로는 인공지능 관련 범죄 방지에 한계
 - * 사형, 징역, 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, 벌금, 구류, 과료, 몰수(9종)
- <mark>개선</mark>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처분^{*}을 신설
 - * 인공지능 자체의 해체·재프로그래밍·폐기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중지, 인공지능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거래 중지 및 재산 취득 무효화 등
- 일정 행정처분 관련법 개정('23~)

5 인공지능 윤리 정립 (2개)

- o (현황)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·확산되면서, 기술 오남용·데이터 편향성·사생활 침해·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등 인공지능 윤리 이슈 대두
 - * 인공지능 기반 채용시스템에서의 성차별(18, 아미존 인공지능 리크루팅), 인공지능스피커 상시로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(19.4, BBC),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프로그램(COMPAS)의 인종차별(18) 등
- (해외) OECD, EU 등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전략과 더불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
 - * (OECD) 인공지능 권고안('19.5), (UNESCO) 인공지능 윤리 권고사항 초안('19.5), (EU)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('18.12) 등
- (국내) 지능정보기술의 영향을 고려한 윤리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으나, 인공지능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은 부재
 - →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, 지속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특성, 연구자 자율성 존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참여자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을 '법'이 아닌 '윤리기준' 형태로 제시

①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

과기정통부, '20.12

- 현황 지능정보사회 윤리가이드라인('18.4),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('19.11) 등이 발표되었으나,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범국가 윤리원칙 필요성이 지속 제기
- 개선 인공지능 개발~활용 全 단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포괄적·일반적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
 - *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(25개) 비교·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지향점, 인공지능의 지위, 모든 사회구성원이 준수해야할 주요 원칙 등 제시
- 일정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·발표('20.12)

②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

과기정통부 · 교육부 '21.下

- 현황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 기술 중심의 역량 강화에 집중된 교육만 으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한계
- 개선 전문인력, 일반시민, 개발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구분하여 생애단계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연구·개발
- 일정 인공지능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·개발('21.下), 초·중등 관련 과목에 인공지능 윤리 내용 포함('22)

2. 인공지능 활용 분야 (13개)

1 의 료(2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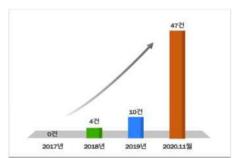
- (현황)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, 진단·수술 의료기기, 신약개발 등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, 정확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가능성 증대
- (해외) 향후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*되고, 기존 서비스 시장 중심에서 하드웨어 시장이 성장** 하며 다양화될 전망
 - * 49억 달러('20) → 452억 달러('26) (Market and Markets, '19.3)



출처 : 마켓앤마켓('20)

- ** '19년 기준 인공자능 의료시장은 서비스 부분의 시장 점유율(76%)이 높으나, 향후('19~'25)에는 하드웨어 부분의 성장율이 서비스 부분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(UnivDatos, '19.3)
- (국내)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
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*이나,
 영상인식(의료기기)·신약개발 등의
 영역**이 확대되는 중
 - *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'20년 약 1.9조원, 세계시장의 1% 수준(KISTEP('20))
 - ** (의료기기) 0건(17) → 10건(19) → 61건(20.12), (신약개발) SK 바이오팜, 스탠다임, 신테카바

<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 >



출처 : 식약처('20.12.1일 기준)

- 이오 등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다수 출현, (특허) 75건('16) → 218건('19)(특허청, '20)
- 세계 최초로 **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*을 수립**하는 등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**제도 개선을 추진 중**이나,
 - *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('17.12)
- 인공지능 활용 시 건강보험 적용, 의료비 부담 등 개선 과제 존재
- →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비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술이 의료 현장에 활용·확산될 수 있는 법제 기반 마련

①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개발

식약처, '22.上

- 현황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설정*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
 - *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(IMDFR: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)
- 개선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, 기준 적용 대상, 상호 인증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의 주도적 개발
 - ※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컴퓨터를 이용해 기계학습 등으로 인간의 지적능력 일부 또는 전체를 구현하는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정의
- 일정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개발('22.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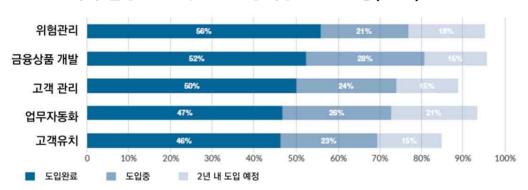
②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

복지부, '23~

- 현황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*되었으나,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도입·활용하는데 일부 한계가 존재
 - *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('19.12) : 다양한 혁신 의료기술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(영상의학 분야)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
 -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기업들이 도달한 기술수준이 건강보험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가치(별도 보상)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보다 다소 낮을 수 있으며, 관련된 임상 결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
- 개선 혁신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및 요양급여 여부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
- 일정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('23~)

- (현황) 금융은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 중 하나로, 위험관리, 금융상품개발, 고객관리, 업무자동화, 고객 유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도입률*을 보임
- 국내에서도 고객 상담용 챗봇, 자산관리용 로보어드바이저(RA), 위험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등이 활용 중
 - ※ 세계 금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매출이 20억 달러(*20)에서 91억 달러(*25)로 증가할 전망 (OMDIA, Total financial services Al software revenue by region, world markets: 2020–25 '20.8.10)

【 세계 금융권 도메인별 인공지능 도입 현황('20년) 】



출처: World Economy Forum, A Global AI in Financial Services Survey('20)

○ (해외) 유럽(EU)은 디지털 금융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·인증·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안을 제·개정

분야	관련 입법
지급 결제	▶ EU「지급결제산업지침」개정(Payment Services Directive 2, PSD2)(`18)
인증	▶ EU「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(elDAS)」제정(^16)
플랫폼	▶ EU「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」제정(`20)

- (국내) 금융 혁신을 위한 다양한 법제 정비를 추진*해왔으나,
 금융사고 예방 등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의 법제 정비 보완 필요
 - * 투자자문업 활성화(로보어드바이저 허용)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17.5월),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규정 개정(19.1월),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 발표(20.7월) 등
 - →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·확산과 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간의 조화로운 입법 방안 마련

① 이상금융거래 탐지·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

금융위, '21.上

- 현황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(FDS)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,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 등 정보공유*가 금융기관 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
 - * 인공지능 기반의 FDS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으로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
- 개선 금융기관 간에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
- 일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(21.上)

② 결제·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

과기정통부 · 금융위, '21.上

- 현황 공인인증서 폐지 및 다양한 사설 인증방식 도입에 따라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, 생체정보의 위조·유출 및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보안위협* 증가
 - *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기존의 보안인증 체계 우회 등
- 개선 ^①사설 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·인정제도 운영,
 - ②생체정보 등 인증수단의 위조·유출 등에 대비하여 인증수단에 대한 보안기준 마련* 및 인증수단의 보안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인증·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
 - * 예 : 금융분야의 고위험거래에 대해 강화된 인증방식 적용 등
- 일정 ^①전자서명 평가·인정제도 운영*, ^②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**('21.上)
 - * 전자서명의 안전성·신뢰성·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'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'을 고시('20.12.10)에 따라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·인정기관이 확인
 - ** 향후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과정에서 보안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

- (현황) 인공지능 기반 행정처리 시스템·챗봇 등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행정 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
 -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은 **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**과 행정서비스의 **편의성 제고**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
 - <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 도입 사례 >

구분	사례
해외	 ▶ (미국) 미국 남서부 3개 주(州()에서 2주간 자율주행 트럭으로 우편 배달('19) ▶ (일본) 첨단수사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도입 실증실험 착수('18) ▶ (네덜란드) 스마트 신호등(교통량 데이터로 신호 변경)('19) ▶ (중국) 자율주행 구급차와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활용해 구급차 이송시간 단축('19) ▶ (에스토니아) 소액사건을 담당할 로봇 판사 설계 착수('19)
국내	▶ (출입국관리) 공항 범죄 테러 위험인물 및 위험물 식별 추적 시스템 ▶ (의료) 인공지능 의사, 닥터 앤서 임상실험 시작('19)

- (해외) 영국·캐나다 등 28개국은 인공지능 전략에 공공부문 혁신을 포함하였고, 일부 국가는 행정 자동화에 대한 법제 정비 추진
 - 독일 : '연방행정절차법'에서 '행정행위의 완전자동적 발급' 인정("17)
 - **캐나다** : 행정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'행정기관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지침('20.4)'^{*} 발표
 - *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알고리즘의 영향을 평가,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동화된 결정의 근거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함
- o (국내) 법률의 근거 없이는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도입할 수 없어 현재 출입국관리 및 민원서류발급(KIOSK)* 등에서만 허용
 - * 「출입국관리법」,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법에서 일부 자동화된 행정처분 인정
 - 행정의 법 원칙, 행정절차 등에 관한 행정기본법^{*} 발의('20.7) 뿐만 아니라, 명확한 행정을 위해서는 일반법적 근거 외에 개별법적 근거 필요
 - *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'자동적 처분'을 인정,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적 처분의 이의신청까지 인정
 - →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명확한 개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

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

법제처, '21.下

- 현황 국가의 권한 행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
- 개선 인공지능 등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행정행위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필요시 개별법*에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자동화 처리 근거 마련 추진
 - * (예) 교통법규위반 처분 시 도로교통법, 조세 부과시 지방세법 등
- 일정 행정기본법 제정("21.下)

②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

법제처 · 권익위, '22.上

- 현황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오류가 있는 경우,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어 행정구제*가 미흡할 수 있음
 - *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, 원상회복 또는 행정작용의 취소·변경을 청구하거나, 기타 피해구제·예방을 청구하여 권리·이익 보호를 받는 것
 - ※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권리 구제 가능 : ^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개입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, ^②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'영조물'로 보아 손해 배상
- 개선 인공지능의 자동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하고,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*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
 - * '자동적 처분'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정·시행 후, 개별법의 근거 법령 개정에 맞춰 검토
- 일정 행정기본법 제정('21,下), 행정심판법 개정('22.上)

③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

법제처, '23~

- 현황 인공지능 행정행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지, 행정 행위의 근거와 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지 등 행정행위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
- 개선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을 법령에 규정할 경우,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, 「행정절차법」상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의 보완 방안 등에 관한 일반 지침 성격의 규정 마련
- 일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에 관한 입법 지침 또는 행정기본법 개정방안 마련('23~)

- o (현황) 고용·노동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*과 일자리의 단순 소멸보다는 직무변화 및 이동 전망** 상존
 - * 자동화로 저숙련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수요 감소(MT. '18), 글로벌 일자리 30%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(PWC, '18), 2027년까지 미국의 약 7%에 해당하는 만 개의 일자리 소멸(Techrepublic, '17)
 - ** '17년~'37년 사이에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72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(PWC '18) '22년 새로운 일자리 1억 3,300만 개 vs 사라지는 일자리 7,500만 개(WEF, '18)
 -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제고 과정에서 직무 단위 일자리 증가, 재택·시간 근무제 확대 등 고용형태 다양화
 - 현행 노동법제는 전통적인 생산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,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방식이 확산·진화하는 현상을 규율하기 어려움
- (해외) 주요국은 긱(Gig) 노동자,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제 개선 중 <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정비 동향 >

국가	정비 법제
EU	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(19) :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
	된 근로조건 정보제공권, 수습기간 제한권, 무료 직무교육 보장
프랑스	노동법전 개정(18) :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
	사회보험의 적용, 노동3권의 보장 등을 명문화
미구	주법·조례 제정 : 캘리포니아주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법(19),
	시애틀시 독립계약자 보호 조례(15)

- ㅇ (국내) 특수형태근로종사자*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적용을 확대 중이나, 프리랜서, 한시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에 대해 법규의 사각지대 존재
 - *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

《 플랫폼 노동자 》

출처: 한국고용정보원, '19

- ▶ 법률상 용어가 아닌,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통상적 용어.
- ▶ 현황, 통계 등이 공식 집계되지 않고, 44~54만여명 정도로 추산
- ▶ ^①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, ^②단속적(1회성, 비상시적, 비정기적)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, ③고용계약 체결 없이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 형태
- →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형태 다변화, 구조조정 상시화 등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제의 유연성 확보

①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

고용노동부 · 기재부, '21.上

- 현황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제도화된 보호 필요
-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를 고용안전망 內로 포섭하여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, 비자발적 실업 시 생계보장 및 재취업 지원 강화
- 일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('20.12월), 로드맵에 따라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(~'21.上)

②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

고용노동부, '21/ '23~

- 현황 비대면·디지털 경제 확대로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종속성 중심의 현행 노동법제 및 사회안전망 보호 체계의 한계
 - ※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-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
 - *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: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* 대법원 판례 (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29736 판결)
 "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--"
 - 시간·장소에 제약이 없는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형태가 나타 나는 등 일하는 방식이 전환*되고 있으나, 사업장에서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새로운 근무형태에 적용하는데 한계
 - * ▲(장소) 사업장 지배·관리 장소 → 근로자 선택 ▲(형태) 집단근무 → 개별근무 ▲(시간)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경계 모호
- 개선 플랫폼 종사자 특성 등 반영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^{*} 및 보호· 지원을 위한 입법 마련
 - * 플랫폼 종사자 사회 안전망 강화,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 포함
 - 재택근무 등과 같이 근무 장소·시간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연구 및 제도화 검토
- 일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('20.12월),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검토('21),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선 연구('22년) 및 제도화 검토('23~)

- (현황) 재활·돌봄 등 복지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치매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고령층 대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양의 확대와 질 향상 기대
 - *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복지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(75%)을 기대(한국노동연구원, '18)
 - 그러나,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로 인해 인공 지능에 따른 혜택의 불평등 및 사회·경제적 소외가 초래·심화될 우려

<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기기 인지율 및 경험율 >



출처: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('19)

- 포용적 관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, 인공지능 오작동에 대비하는 위험 분산화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·강화 필요
- (해외) 주요국은 '디지털 포용'의 가치를 국가 디지털 전략에 반영 하는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도

< 해외 주요국의 입법 동향 >

국가	주요 내용
영국	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(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) 제정(18.7) - 자율주행차 사고의 사고운행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 부담
싱가 포르	디지털 준비 청사진(Digital Readiness Blueprint, '19.2)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,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참여 제시
일본	인공지능전략 2019 발표('19.3) :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보한 사회 구축과 외국인, 장애인, 고령자 등 다양한 삶의 방식 지원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제도 설계 추진

- ㅇ (국내)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격차 해소,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예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, 디지털 포용 구현과 복지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필요
 - → 인공지능 **편익의 보편적 향유**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, 인공 지능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등 포용적 입법 추진

①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법적 기반 확립

과기정통부, '21.下

- 현황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, '디지털 포용' 관련 구체적 내용은 규정되지 않아, 안정적·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추진에 한계
- 개선 ^①종합적 국가정책방향과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시민사회·기업·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*하는 정책 추진기반 마련
 - *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등
 - ^②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설치·운영 및 디지털역량진단실시 등 격차 해소(사후적)에서 예방(사전적)으로 확대
 - ^③지능정보기술·서비스의 포용적 활용 촉진 및 디지털포용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
- 일정 (가칭) 디지털 포용법 제정('21.下)

②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

과기정통부, '22.下

- 현황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고위험분야(국민의 생명·신체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) 사업자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관리·활용 시 준수 의무가 있는 기술기준 고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
 - 다만, 현재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산업 관련 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, 기술기준 고시 제정은 유보 중
 - *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(기술기준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관리·활용하여야 한다.
- 개선 추후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정성·신뢰성·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인공 지능기술 개발·관리·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
 - ※ (예) 긴급정지장치(Kill Switch) 의무화, 접근기록(Log)의 기록 의무화 등
- 일정 '인공지능 기술기준 고시' 마련('22.下)

③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

법무부·과기정통부·복지부, '23~

- 현황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·결정 능력을 보조하는 경우의 인공지능의 법적 효력이 규정되지 않아 복지 분야에서 판단·선택의 보조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한계 존재
 - ※ 성년후견제도 : 장애·질병·노령(치매) 등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의 결정· 계약을 통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의 보호·지원을 제공하는 제도
- 개선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성년후견인*의 의사표시·결정· 판단의 보조도구로서 인공지능 활용 방안 마련 및 법적 효력 인정** 검토
 - * 질병, 장애, 노령,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(민법 제9조)
 - ** 인공지능이 피성년후견인을 보조하여 합리적·공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체결(사기 등)이 발생한 경우는 취소를 인정 등
- 일정 민법 개정방안 검토(*23~)

④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

국토부·해수부, '23~

- 현황 자동차·선박 등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다한 배상책임으로 관련 산업에 인공지능기술 도입이 지체되는 결과 초래 우려
- 개선 인공지능 고위험 분야의 사고와 막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·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제도 개편방안(예 : 의무보험제도 확대 등) 마련
- 일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(자율주행차) 개정 검토 및 자율운항선박 관련 사고보험기준 마련 추진('23~)

- ◇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**자율주행차("18.11 旣수립), 자율** 운항선박('21 예정)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(旣)수립 및 추진
- □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(관계부처 합동, '18.11)
 - ㅇ (현황)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분야로서 연평균 41%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
 - *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,500억원('20)→약26조원('35년)으로 연평균 41% 성장 예상
 - 자율주행차는 제작안전, 교통, 보험, 통신보안,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
 - ㅇ (주요 과제)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8대 시나리오 도출, **4대 영역에서 30건의 규제 개선방안* 마련**('18.11) → 기술변화 등 감안, 재설계 추진('21.上)
 - * [®](**운전주체)** '사람'에서 '시스템'으로 운전자 개념 확대, [®](**차량장치**) 안전한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, ③(**운행**) 사고발생시 민·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, [®](인프라)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·사물위치정보 수집·활용 허용
- □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(관계부처 합동, '21 예정)
 - (현황) 자율운항선박은 해운·항만·조선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,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인공지능 관련 유망 신산업
 - *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568억\$('16)→1,550억\$('25)로 전망(Acute Market Reports, '17)
 - 세계 각국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도 자율운항 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추진중이며, 한국도 주도적으로 참여중
 - ㅇ (주요 과제) 자율운항 선박의 발전 양상을 감안하여, 주요 영역별 (운항주체, 선박 장치, 운용, 인프라) 규제 개선방안* 마련 추진
 - * ①(운항 주체) 자율운항에 따라 변화하는 인력의 역할 정립 및 직무전환 프로그램 개발, ②(선박 장치) 지능화 시스템 인증기준 마련 ③(운용) 자율운항 사고 대응체계 마련 및 책임소재·보험기준 재정립 [®](인프라) 스마트 항만 연계 물류 체계 마련

Ⅵ. **향후 계획**

□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수립 후 정비 본격화

- 30개 과제별 주관부처가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"정비추진계획" 수립(~'21.2분기)
- 정비 대상(법령, 가이드라인 등), 일정, 세부 정비방향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을 포함
- 정비추진계획 심의·조정(4차위) 후 **법령 제·개정안 도출 등 정비** 추진('21.3분기~)

□ 지속적인 로드맵 수정·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

- 인공지능 기술 발전 양상, 사회 구조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
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수정·보완, 분야별·영역별 법령정비
 신규과제 발굴 추진
 - * 중·장기과제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쟁점사항 보완, 추가 등 법제정비방안의 완성도 향상
- o 로드맵의 수정·보완,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'인공지능 법제정비단'을 활용

□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도출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

- 인공지능 법제 정비 수요의 제기,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 강화
- 4차위는 산·학·연 전문가, 소비자·시민사회 대표자,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,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역할 수행

[첨부 1] 인공지능 법제 정비 과제 리스트 (30개)

	과제 목록	관계 부처	일정						
● 인공지능 공통 기반									
데 이 터	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	과기정통부	′21.上						
	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	과기정통부·개인정보위	′21.上						
	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	산업부·중기부	′21.上						
	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	개인정보위	′21.上						
	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	문체부	'21.上						
	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	개인정보위	′21.下						
	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	특허청·공정위	'22.下						
알	자율적 알고리즘 관리·감독 환경 조성	과기정통부	′21.下~						
고 리 즘	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	과기정통부·공정위	′21.下						
	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	공정위·과기정통부	′21.上						
법인격	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	문체부·특허청	′21~						
	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	법무부·과기정통부	′23~						
책 임	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	과기정통부·법무부	′23~						
	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	법무부·공정위	′23~						
	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	과기정통부	′23~						
윤	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	과기정통부	'20.12						
리	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	과기정통부·교육부	′21.下						
\langle	인공지능 활용·확산								
의	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개발	식약처	'22上						
료	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	복지부	′23~						
금	이상금융거래 탐지·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	금융위	′21.上						
융	결제·인증서비스의 안전성 강화	과기정통부·금융위	′21.上						
χu	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	법제처	′21.下						
행 정	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	법제처·권익위	'22.上						
	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	법제처	′23~						
고	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	고용노동부·기재부	′21.上						
용	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	고용노동부	23~						
포용	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	과기정통부	′21.下						
	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	과기정통부	′22.下						
	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	법무부·과기부·복지부	′23~						
	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	국토부 해수부	′23~						

(첨부 2)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

		2020 2021		l	2022			관계
	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2023~	부처
인공 지능 공통 기반	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		 ●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❷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⑤ 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④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⑤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	④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 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		⑦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		과기부/문체부 산업부/개보위 특허청/공정위
	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		❸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· 투명성 확보	●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· 감독 환경 조성 ②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				과기부/공정위
	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여부 검토			①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			②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	문체부/특허청 과기부/법무부
	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						●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②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③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	과기부/법무부 공정위
	인공지능 윤리 정립	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		②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 큘럼 개발				과기부/교육부
	의료				●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(가이드라인) 개발		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	식약처/복지부
인공	금융		● 이상금융거래 탐지·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 ② 결제·인증서비스의 안전성 강화					금융위/과기부
지능 활용 확산	행정			●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	②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		❸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	법제처/권익위
	고용·노동		●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				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 관리 모색	노동부/기재부
	포용·복지			①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		❷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	❸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❹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	과기부/복지부 법무부/국토부 해수부